

2014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 전략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수출유망 전략품목 및 민간 투자유망 국산화 품목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4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글로벌전략기술개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28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글로벌전략기술개발” 사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선도적 투자(First mover)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공모 방식’으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 기술경쟁력과 수출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수출유망 전략품목에서 도출된 기술개발을 지원
 - 투자연계과제 : 미래유망 및 국산화 전략품목에서 도출된 기술개발에 대해서 민간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지원
- ‘14년 지원규모 : 598억원
(글로벌 강소기업 357억원(신규171억원), 투자연계 241억 원(신규126억원))

2. 지원분야

- 수출유망 160개 전략품목 및 미래유망·국산화 194개 전략품목의 기술제안요청서(RFP : Request for proposal)에 부합되는 기술개발 지원

☞ 기술제안요청서(RFP)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하며, 공지되는 RFP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과제신청이 불가능함

3.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의 각 과제별 신청자격에 충족하고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 (신청자격은 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
-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 다음 4개 항목 중 1개이상 해당하는 경우
 - ① 전년도 직수출실적 3백만불 이상인 기업이면서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나) 벤처기업,
 - 다)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라)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5% 이상인 기업
 - ② 최근 3년('11~'13)간 직수출실적 평균 3백만불 이상인 기업이면서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나) 벤처기업,
 - 다)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라)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5% 이상인 기업
 - ③ 중소기업청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④ 중소기업청 '글로벌 하이웨이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
 - * 다만,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중 "World Class R&D 지원사업" 수행중인 기업은 과제종료이후 신청가능
 - 투자연계과제 : 다음 4개 항목 중 1개이상 해당하는 경우
 - 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② 벤처기업,
 - ③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④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5% 이상인 기업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를 토대로 서면 검토(전문기관) 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 (관리기관)각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와 삼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구 분	확인 근거 (증빙서류)
설립년월일 (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함**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후, 개인사업자 설립년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수출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대금을 영수한 외국환은행에서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개발투자비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및 기타원가명세서 등의 해당계정과목을 확인*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붙임2> 기술개발투자액 확인서 작성하여 현장조사시 제출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참여횟수조회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 관리 >> 과제참여횟수조회(졸업제관련)** 참여제한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안내 >> 참여제한 확인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 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 지원(후보)과제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및 지원제외사항이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신청 및 지원제외사항이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4. 지원내용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0%이내에서 최대 2년, 10억원 (연간 5억원 이내)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40% 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4년 3월 10일(월) ~ 3월 31일(월)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 ~ 3일전에 온라인신청완료 요망 (반드시 접수중 출력 요망)
※ 전화응대는 3월 31일(월) 18시까지 가능

○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3.13(목) 14:00, VR빌딩 B1 블루룸(서초구 서초동 1706-5)
- 내용 : 사업소개, 온라인신청방법, 사업계획서작성방법 및 투자심사안내 등
- 사전신청 : 3.10(월) 18:00까지 사전신청요망
 - * 신청서 작성하여 rnd@kvca.or.kr 또는 FAX(02-2156-2140)로 송부
 - * 문의처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02-2156-2131~35)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2014년 중소 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을 반드시 출력 필요

○ 온라인 신청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접수 확인 및 완료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 ~ ⑩호] 의 구비서류를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Part I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②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공통
③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④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⑤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⑥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⑦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⑧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4. 6.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공통사항

- **현장조사(4월)** : 신청기업(주관기관)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대면평가위원회에 제출
- **대면평가(5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결과, 사업계획의 창의성·도전성, 기술성, 사업성 및 과제 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 각 과제별 평가·선정절차

<글로벌강소기업 육성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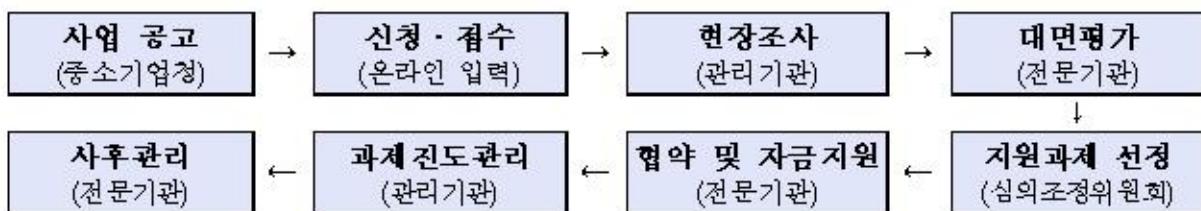
- **지원과제 선정(6월)** : 대면평가결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우대배점 - 감점**

· 우대배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2014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6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과제 추진절차 >



* (관리기관) 각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투자연계 과제>

- **지원과제 선정(6월)** : 대면평가결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민간 투자유치를 조건으로 하여 지원과제 확정

※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투자연계과제는 우대배점 및 감점 적용하지 않음

- '지원과제'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한하여 민간 투자유치 자격을 부여

- **민간 투자심사(통합 사업공고일 ~ '14.10.31)**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과제'로 확정된 중소기업은 '14.10.31일까지 민간 투자유치 실시

* 투자금액은 기술개발기간 완료 이후에 회수 또는 만기 도래함을 조건으로 함

- 투자심사 유형 및 조건

투자방식	투자금액	개념
신주발행 (보통주, 우선주)	정부출연금의 50%이상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규 발행된 주식 *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기술개발기간 이후 상환권 청구 가능
전환사채 (CB : Convertible Bond)	정부출연금의 100%이상	계약서상 정한 전환가격에 따라 투자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 투자기관 및 조건 : 아래 투자기관과 무담보 조건으로 투자계약 체결

* 통합 사업공고일('14.1.3)이후 투자기간 만료 전에 체결된 투자에 한해 인정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 포함), ②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술투자조합 포함), ③ 한국벤처투자조합, ④ 한국산업은행, ⑤ 중소기업은행, ⑥ 은행, ⑦ 사모투자전문회사, ⑧ 기술보증기금 ⑨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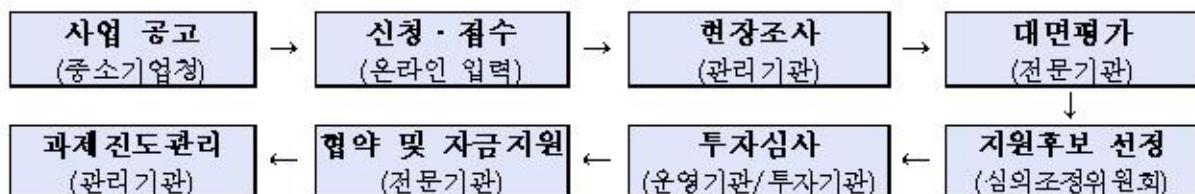
- 투자연계 지원 예산 집행기준 : 지원 예산 소진시까지

- 투자심사기간 종료전이라도 예산 소진시, 투자심사 및 사업 마감
- 투자완료 순으로 지원, 투자완료한 경우라도 예산 소진시 지원 불가

* 과제신청 완료 이후 대면평가 이전이라 하더라도,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사전 투자심사' 가능 : 운영기관(한국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www.mdinvestor.kr)을 통해 신청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투자심사기간 만료일인 '14.10.31 이전에 투자계약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운영기관에 제출 및 확인후 전문기관에서 협약체결 안내

< 투자연계과제 추진절차 >



* (관리기관) 각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운영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7.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결과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할 수 있음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 의무사항 불이행을 대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 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 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채무불이행을 대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 및 채무불이행 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조사 전까지 해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 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 단, 창업 2년 미만인 업체와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창업 2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9. 기타 공지사항

①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세부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부과제명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글로벌전략기술개발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투자연계과제

②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참여 기업 포함)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 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 받을 수 있음

수행중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2개	불가	불가
1개	가능	1개
0개	가능	2개

* 단,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R&D 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 지원’ 및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

③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 (산학연사업에 해당)의 자격으로 선정되어,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은 총 3회까지, 선택집중 사업은 총 4회까지 과제를 협약한 경우 사업에 참여 불가
-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 <붙임 1> 참조

- ‘05년 이후 ‘선택집중’ 사업을 1회 이상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기업은 ‘저변확대’ 사업에 참여 불가



- 그 외 적용기준

- 제품 · 공정개선사업은 ‘저변확대’ 사업 참여가 가능한 기업에 한하여 참여 횟수 제한 없이 참여 가능(단, ‘저변확대’ 사업 총 3회 협약기업의 경우 참여 불가)
- ‘05년부터 ‘저변확대’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선택집중’ 사업만 수행한 기업은 1회 추가하여 총 5회까지 참여 가능
-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 횟수 계상

④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⑤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 · 장비에 대해서는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 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기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삼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 · 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 ⑥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 ⑦ 디자인과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과의 연계
- 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기술제안요청서(RFP)에 선정된 주관기관은 협약체결시, 연구활동비 중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을 계상할 것을 권고함
- ⑧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4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10.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1661-1357(내선 1번)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1661-1357(내선 1번) 042-715-2335
운영기관 (투자연계과제만 해당)	한국벤처캐피탈협회 (R&D사업화투자협의회)	투자심사, 투자연계 등	02-2156-2131~36

□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기관명	전화	주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58~6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7/48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1/58~59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2/75/7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8/56/35/36/46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33/36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1~34/48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1/43/51~5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54/55/5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7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 R&D사업화투자협의회(투자연계만 해당) : <http://www.rndinvest.or.kr>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연도	“저변확대” 사업명	“선택집중” 사업명
2005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생산현장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컨소시엄개발과제)
2006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중소기업개발과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직무기피요인해소사업(컨소시엄개발과제)
2007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중소기업기술개발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슈퍼컴퓨터활용과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컨소시엄기술개발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첨단장비활용과제)
2008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일반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슈퍼컴퓨터활용과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전략과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일반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선도형기술혁신전략과제지원(첨단장비활용과제)
2009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일반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보급확산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슈퍼컴퓨터활용과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평가연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선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력펀드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생산환경혁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첨단장비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2010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창업·실용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유망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슈퍼컴퓨터활용과제)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실용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글로벌투자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신기술사업화연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협력펀드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사업(지정공모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선도과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첨단장비활용과제)
2011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서비스혁신과제)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산업보안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기업제안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R&D기획지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농공상용화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글로벌협력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연계형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제안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2012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서비스연구개발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해외수요처연계기술개발사업해외수요처 (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해외기술이전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글로벌강소기업육성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투자연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미래선도과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R&D기획지원연계과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p>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보급화산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농공상융합형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성장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재도약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건강관리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앱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1인창조기업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투자연계멘토링과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첫걸음과제)</p>	<p>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해외수요처 (글로벌협력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산연협력과제) 중소기업이전기술개발(출연연과제)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신규설치) 산학연협력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업그레이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제조현장녹색화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산연협력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센터연계형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사업화연계과제) 융복합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연구기관제안과제)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출연연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수요조사과제)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기업제안과제)</p>
2013	<p>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p>	<p>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p>

※ '13년부터 사업단위로 '저변확대', '선택집중'을 구분하여 운영

<불임 2>

기술개발투자액 확인서						
① 업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명						
④ 연구개발비 투자금액 및 비율 (단위: 억원)						
재무상태표 (개발비 총 증가액) (A)	손익계산서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B)	제조원가명세서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C)	기타원가명세서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D)	연구개발비합계 (E=A+B+C+D)	매출액 (F)	연구개발비 투자비율 (=E/F×100)
<p>상기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한 책임은 당해기업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p>						
2014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직인)	
중소기업청장 귀하						

* 작성시 고려사항

- 기술개발투자비(연구개발비)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및 기타 원가명세서의 해당계정과목에 계산된 금액

재무제표	계정과목	연구개발비 해당금액
대차대조표	무형자산의 개발비	당해 연도 개발비 총 증가금액 (=당기말 개발비-전기말 개발비+개발비상각비)
손익계산서	판매비와 관리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당해 연도 손익계산서 금액
제조원가명세서	제조경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당해 연도 제조원가명세서의 금액
기타원가명세서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당해 연도 기타원가명세서의 금액